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4
----------	-----

2019. 3. 15.(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정상교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2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3월 11일

-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상교 의원)

가. 제안사유

○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세계무예마스터
십위원회(WMC) 등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조례) 마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부여(안 제4조)

- 전통무예의 계승·발전·보급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안 제5조)
- 보조금의 지도 감독(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 둘째,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을 위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 셋째,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산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을 위한 조례로서, 특히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의결 연월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
----------	-----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 정상교,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연철흠, 이옥규,
이숙애

1. 제안 이유

-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등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조례) 마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부여(안 제4조)
- 전통무예의 계승·발전·보급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5조)
- 보조금의 지도 감독(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무예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라.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17.(10일간)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보급·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비용의 지원 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3.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비용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5조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세계무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예의 세계화 및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무예 연구 및 지식 공유, 충북을 무예의 메카로 육성·발전

2. 비용 발생 요인

-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편성
- 국제무예센터 운영·사업비 비용 편성
- 한국전통무예진흥원 건립에 따른 비용 편성

3. 관련조문

-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의2(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5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무예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한국전통무예진흥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및 운영 등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60,264백만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22%, 도비 53%, 시군비 24%, 기타 1%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60,264	2,560	5,460	33,194	18,025	1,025
세계택견대회	625	125	125	125	125	125
국제무예센터 운영지원	6,483	1,757	2,057	2,669	-	-
세계무예마스터 십위원회 지원	3,956	478	778	900	900	900
전통무예진흥원 설립	49,200	200	2,500	29,500	17,000	-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민영완